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예식장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34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공예식장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0호)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은회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6. 13.

다. 회 부 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공공예식장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공공예식장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결혼서비스 소비자보호법안’)(의안번호_2208291호)에 따라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³⁾되는 경우

3)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_2208291) 제13조(공공예식장의 개방 등)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로 ‘공공예식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반에 개방하는 예식공간⁴⁾을 말하며, 2024년 6월말 기준 139개소를 운영 중임⁵⁾.

[공공 예식 공간 현황 (2024.6.26. 기준)]

기관 분류	개소수	구분	시설명
국립시설	6개소	기존(1개소)	관세인재개발원
		신규(5개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	98개소	기존(86개소)	부산 수영사적공원, 경기 부천 한옥체험마을, 강원 속초 시립박물관 등
		신규(12개소)	세종 호수공원, 세종 중앙공원, 충북 청주 미동산수목원 등
공공기관	25개소	기존(4개소)	한국전력공사 아트센터 양지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웨딩홀 등
		신규(31개소)	내장산국립공원 생태공원, 태권도원 나래홀 (전북 무주) 등
합계	139개소	기존 91개소 / 신규 48개소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 2024.6.26.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4)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_220829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서비스”란 결혼식장의 대여, 결혼식을 위한 상담, 결혼식 및 결혼과 관련된 사진촬영·물품대여·미용, 결혼준비의 대행 등 결혼식 또는 결혼과 관련된 제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혼중개는 제외한다.
 2. “결혼서비스업”이란 결혼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영업
 - 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소비자로부터 결혼식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영업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공공예식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반에 개방하는 예식공간을 말한다.
- 5) 신규 공공예식장의 경우 준비 기간에 따라 실제 공공예식장 운영 시점은 지연될 수 있음

첫째, 공공예식장은 민간예식장의 높은 대관료와 불투명한 가격 관행에서 탈피하여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혼인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둘째, 「결혼서비스 소비자보호법안」은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유재산특례를 통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부담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예산 등 다른 지원 방식보다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것의 경제적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셋째, 「결혼서비스 소비자보호법안」은 국유재산 특례 요건을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률안은 공공예식장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지 않아 국유재산특례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⁶⁾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⁷⁾.

6)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아울러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인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_2208291)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8291호)

제13조(공공예식장의 개방 등)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0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2. 12. 31.

문의처

02)6788-5150

- 7)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특례가 결혼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므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별도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 보충성이 인정되며, 예식장 사용료 감면을 조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존속기한 설정 원칙에 비추어 존속기한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